

## 상여금 지급기준액표(제13조제3항 관련)

### 1. 일반직 국가공무원

| 행정직군<br>·<br>과학기술<br>직군<br>공무원 | 고위공무원단에<br>속하는 공무원 |      | 3급   | 4급   | 5급   | 6급   | 7급   | 8급   | 9급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급 22호봉            |      | 20호봉 | 20호봉 | 18호봉 | 18호봉 | 15호봉 | 12호봉 | 10호봉 |
| 우정직군 공<br>무원                   | 우정1급               | 우정2급 | 우정3급 | 우정4급 | 우정5급 | 우정6급 | 우정7급 | 우정8급 | 우정9급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호봉               | 20호봉 | 20호봉 | 20호봉 | 18호봉 | 18호봉 | 15호봉 | 12호봉 | 10호봉 |

비고

1.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직급별 기준 호봉액은 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 5조에 따른 월봉급액에 따른다.
2. 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.

### 2. 별정우체국 직원

| 국장 및<br>사무직 | 국 장     | 사무장     | 사무주임    | 사무원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            | 6급 18호봉 | 7급 15호봉 | 8급 12호봉 | 9급 10호봉 |
| 집배원         | 집배 6급   | 집배 7급   | 집배 8급   | 집배 9급   |
|             | 6급 18호봉 | 7급 15호봉 | 8급 12호봉 | 9급 10호봉 |

비고

1.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직급별 기준 호봉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월봉급액에 따른다.
2. 국장 및 사무직에 대해서는 행정직군·과학기술직군 공무원의 직급 및 호봉을 적용하고, 집배원에 대해서는 우정직군 공무원의 직급 및 호봉을 적용한다.
3. 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.

3. 일반직 국가공무원, 별정우체국 직원 외의 사람에 대한 상여금 지급기준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